##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74

발의연월일: 2022. 9. 6.

발 의 자: 우원식 · 강민정 · 김교흥

김원이 · 김한정 · 김홍걸

박홍근 • 서동용 • 서영석

유정주・이동주・아수진॥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주철현 • 진성준 • 홍성국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상호 협의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도입하 고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 우가 많고 신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겪고 있는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전쟁·팬데믹같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여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의 서면에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로 갈음한다고 적고, 그 사항이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면 제1항의 서면에 적은 것으로 본다.
- 1.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위탁일
  - 나. 목적물등의 내용(종류, 수량 등 상세한 물량내역을 포함한다)
  - 다. 하도급대금 금액 및 그 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보정지수 등을 포함한다)
  - 라. 목적물등의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및 그 항목별 공급원가 마. 납품등의 시기 및 장소
  - 바.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2. 공급원가의 변동(서면 교부 이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로서 제1호라목의 항목별 공급원가가 같은 호 다목의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해당 항목별 공급원가가 100분의 3 이상상하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목의 하도급대금 변경계산식 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의 내용
  - 나.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계산식
  - 다.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 경우 하도급대 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4. 그 밖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또는 인건비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의2.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원재료 가격 또는 인건비 등이 급격히 변동되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 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 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을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변경 또는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생 략)	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u>하도급대</u>	②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u>각 호의</u>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u> 사항을 적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제1호 각 목</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은 제1항의 서면에 수급사업자	
	가 제출한 견적서로 갈음한다	
	고 적고, 그 사항이 기재된 견	
	적서를 첨부하면 제1항의 서면	
	에 적은 것으로 본다.	
<u>&lt;신 설&gt;</u>	1.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 설>

가. 위탁일

나. 목적물등의 내용(종류,수량 등 상세한 물량내역을 포함한다)

다. 하도급대금 금액 및 그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품셈, 보정지수 등을포함한다)

라.목적물등의 공급원가를구성하는 항목 및 그 항목별 공급원가

 마. 납품등의 시기 및 장소

 바.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시기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2. 공급원가의 변동(서면 교부 이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하닌 사정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로서 제1호라목의 항목별 공급원가가 같은 호 다목의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해당한목별 공급원가가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를 말한

<신 설>

<신 설>

③ ~ ⑨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개정 및 사용) ① (생 략)

<u><신</u>설>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에 관 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목의 하도급대금 변경계산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의 내용
- 나.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계산식
- 다.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 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4. 그 밖에 하도급계약의 내용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정·개정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 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또는

###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 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 2.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u>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1. (현행과 같음)
1의2.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
에서 원재료 가격 또는 인건
비 등이 급격히 변동되어 공
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u>⑤</u>
<u>제4항</u>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 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저 금지)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8. (생 략) <신 설>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⑧ 제7항
제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8 (현행과 간음)

- 1. ∼ 8. (현행과 같음)
- 9.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 로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 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① (혂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	
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여	1)   -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히	5}   -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의   -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호	<u>5}</u>
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u>에는</u>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의 <u> </u>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	8 -
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의   -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	및   -
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 -
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	를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③ ~ ⑪ (생 략)

2)
변동되어 조합원
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③ ~ ① (현행과 같음)